

가. "인도"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가 어떠한 사람을 재판소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나. "범죄인인도"라 함은 조약, 협약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떠한 사람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10부 집행

제103조

징역형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1. 가. 징역형은 재판소가 재판소에 대하여 수형자 인수 의사를 표시한 국가의 명단 중에서 지정된 국가에서 집행된다.
나. 수형자 인수 의사를 표시할 때, 국가는 재판소가 동의하고 이 부에 부합되는 인수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다. 특정 사건에서 지정된 국가는 재판소의 지정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재판소에 통지한다.
2. 가. 집행국은 제1항에 따라 합의된 조건의 시행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조건 또는 정도에 현저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재판소는 그러한 알려지거나 예측가능한 상황을 최소한 45일 전에 통지받는다. 이 기간동안 집행국은 제110조에 따른 의무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소가 가호에 규정된 상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집행국에 통보하고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한다.
 -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평한 분배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이 징역형의 집행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
 - 나.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 적용
 - 다. 수형자의 의견
 - 라. 수형자의 국적
 - 마. 범죄의 정황, 수형자의 상황 또는 형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집행국의 지정에 적절한 기타 요소
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가 없는 경우, 징역형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부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재지국이 제공하는 수형시설에서 집행된다. 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한다.

제104조

집행국 지정의 변경

1. 재판소는 언제든지 수형자를 다른 국가의 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수형자는 언제든지 집행국으로부터의 이송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

형의 집행

1. 제103조 제1항 나호에 의거하여 국가가 명시한 조건에 따라 징역형은 당사국을 기속하며,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재판소만이 상소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국은 수형자의 이러한 신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형의 집행과 징역의 조건에 대한 감독

1. 징역형의 집행은 재판소의 감독에 따르며,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징역의 조건은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수형자의 처우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들이 집행국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들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형자와 재판소간의 통신은 방해받지 않으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07조

형집행 만료자의 이송

1. 형 집행 만료 후 집행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집행국이 그를 자국에 체류하도록 허가하지 않는 한 집행국의 법률에 따라 그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이송될 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다른 국가로 이송될 수 있다.
2. 어느 국가도 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한다.
3. 제108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집행국은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위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그 자를 자국법에 따라 범죄인인도를 하거나 또는 달리 인도할 수 있다.

제108조

다른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의 제한

1. 집행국의 구금 하에 있는 수형자는, 재판소가 집행국의 요청을 받아 기소·처벌 또는 범죄인인도를 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한, 그 자가 집행국으로 이송되기 전에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기소·처벌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범죄인인도 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수형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수형자가 재판소가 부과한 형을 완전히 복역한 후 집행국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30일 이상 머무르거나 또는 집행국에서 출국한 후 그 국가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9조

벌금 및 몰수조치의 집행

1. 당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재판소가 제7부에 따라 명령한 벌금 또는 몰수 명령을 집행한다.
2. 당사국이 몰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가 몰수를 명한 수익·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한 결과로써 취득한 재산 또는 부동산의 매매 수익 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 재산의 매매 수익은 재판소로 이전된다.

제110조

감형에 대한 재판소의 재검토

1. 집행국은 재판소가 선고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당해인을 석방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만이 감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당해인을 신문한 후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형의 3분의 2 또는 종신형의 경우 25년을 복역한 경우, 재판소는 감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을 재검토한다. 그 전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에 따른 재검토에 있어서, 재판소는 1개 이상의 다음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재판소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사,
 - 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의 판결 및 명령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인 조력과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벌금, 몰수 또는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자발적 조력, 또는
 - 다. 절차및증거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명백하고 중요한 사정변경을 형성하는 기타 요소.
5. 재판소가 제3항에 따른 최초의 검토에서 감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 후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간마다 그리고 이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 문제를 검토한다.

제111조

도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에서 탈출하여 집행국으로부터 도주한 경우, 집행국은 재판소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에 따라 그 자가 소재한 국가에 인도를 요청하거나 또는 제9부에 따라 재판소가 당해인의 인도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그 자가 형을 복역하고 있던 국가 또는 재판소가 지정한 다른 국가로 그 자의 이송을 명할 수 있다.

제11부 당사국총회

제112조

당사국총회

1.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이에 설치된다. 각 당사국은 총회에서 교체대표와 지문을 동반할 수 있는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이 규정 또는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기타 국가는 총회에서 참관인이 될 수 있다.
2. 당사국총회는,
 - 가. 적절한 대로, 준비위원회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나. 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소장단, 수석검사 및 사무총장의 운영을 감독한다.
 - 다.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의 보고서와 활동을 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재판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마. 제36조에 따라 재판관 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바. 제87조제5항과 제7항에 따라 협력불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 사. 이 규정 또는 절차및증거규칙과 부합하는 다른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가. 총회는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된 1인의 의장, 2인의 부의장 및 18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나. 이사회는 특히 형평한 지역적 배분과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의 적절한 대표성을 고려한 대의 적 성격을 가진다.
 - 다. 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이사회는 총회가 책임을 이행하는데 조력한다.
4. 총회는 재판소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감사·평가 및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장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5. 재판소장, 수석검사 및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들은 적절한 대로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6. 총회는 재판소 소재지 또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1년에 1회 회합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회기를 가진다.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기는 이사회가 스스로 발의하거나 당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7. 각 당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와 이사회는 합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실질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사국의 절대과반수를 투표정족수로 하여, 출석 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 나.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단순다수결로 행한다.
8. 재판소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당사국은 연체금액이 연체 이전의 만 2년 동안 부담해야 할 부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연체가 그 당사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9. 총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10. 총회의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는 국제연합 총회의 언어로 한다.

제12부 재정

제113조

재정규칙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문제는 이 규정과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재정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14조

비용의 지출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총회의 비용은 재판소의 기금에서 지출된다.

제115조

재판소 및 당사국총회의 기금

재판소와 이사회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총회의 비용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한 예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수입원에 의하여 충당된다.

가. 당사국이 납부한 산정된 분담금

나.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이 제공한 기금

제116조

자발적 기여금

제115조를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정부·국제기구·개인·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의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기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

분담금의 산정

당사국의 분담금은 국제연합이 정규예산을 위하여 채택한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고, 그 산정기준의 기초가 된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 합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제118조

연례감사

재판소의 연례 재정보고서를 포함하여 재판소의 기록, 회계장부 및 회계계정은 매년 독립된 감사

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다.

제13부 최종조항

제119조

분쟁의 해결

1.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에 관한 모든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2.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분쟁 개시 후 3개월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간의 기타 모든 분쟁은 당사국총회에 회부된다. 총회는 스스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동 재판소에의 회부를 포함하는 추가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20조

유보

이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21조

개정

1. 이 규정의 발효로부터 7년 후 당사국은 이 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2.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의 차기회의에서 당사국총회는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그 제안을 다룰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는 그 제안을 직접 다루거나, 관련 쟁점상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당사국총회의 회의 또는 검토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의 채택은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4.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은 당사국의 8분의 7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로부터 1년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지 1년 후에 발효한다.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영역에서 개정으로 포함된 범죄가 범해진 경우, 재판소는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당사국의 8분의 7에 의하여 수락된 경우, 그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127조제2항을 조건으로, 개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통보함으로써, 이 규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통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의 회의 또는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개정을 전 당사국에 회람한다.

제122조

제도적 성격의 조항에 대한 개정

1. 오로지 제도적 성격만을 지닌 이 규정의 조항, 즉 제35조, 제36조제8항과 제9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전 2문), 제2항과 제4항, 제42조제4항 내지 제9항, 제43조제2항과 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은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나 당사국총회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되며, 이들은 이를 모든 당사국과 총회에 참석한 다른 자들에게 신속히 회람한다.
2.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당사국총회 또는 검토회의에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23조

규정의 재검토

1. 이 규정이 발효한 지 7년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재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한 재검토는 제5조에 포함된 범죄목록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재검토회의는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 개방된다.
2.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으로 재검토회의를 소집한다.
3. 제121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재검토회의에서 심의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의 채택 및 발효에 적용된다.

제124조

경과조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될 때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후 7년 동안,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역에서 범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제8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주에 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재검토회의에서 재검토된다.

제125조

서명 · 비준 · 수락 · 승인 또는 가입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있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이후 1998년 10월 17일까지 로마의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 일자 이후 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

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정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26조

발효

1. 이 규정은 6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6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규정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60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27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규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가 보다 늦은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한, 통보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국가는 탈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그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자이었던 동안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탈퇴는 탈퇴국이 협력할 의무가 있었던 탈퇴 발효일 전에 개시된 범죄수사 및 절차와 관련된 재판소와의 여하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전에 재판소가 이미 심의 중에 있던 사안의 계속적인 심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규정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규정에서 명하였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작성되었다.

I. 기소장 목차

서장(이라크공격에 이른 경과)

- 제1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 제2 이라크전쟁에 이른 역사
 - 1 이라크 前史
 - 2 걸프전쟁
 - 3 경제제재에 의한 희생
 - 4 미국의 「비행금지구역설정」 과 공중폭격

제1장 이라크공격

- 제1 미국의 이라크공격
 - 1 이라크공격의 실행
 - 2 이라크공격의 이유는 인정되는가?
 - 3 미국의 이라크공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 4 부시대통령, 블레어수상의 죄
- 제2 민간인피해
 - 1 무차별폭격에 의한 민간인 살육
 - 2 특수병기~주로 클러스터폭탄에 의한 민간인공격
 - 3 상관 및 공범자의 책임
- 제3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피해
 - 1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
 - 2 열화우라늄탄이 인체에 주는 두려워할만한 악영향
 - 3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환경오염
 - 4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 인식
 - 5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은 명백한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 제4 보도기관에의 공격
 - 1 파레스티나호텔에의 공격
 - 2 알자지라, 아부다비TV에의 공격
 - 3 보도기관에의 공격에 관해
 - 4 죄

제2장 이라크점령

- 제1 CPA, CJTF7을 통한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점령
 - 1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점령
 - 2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통치
- 제2 점령군의 의무불이행

- 1 미영군의 책임·의무
- 2 미영군이 점령에 수반하는 책임·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
- 제3 이라크국민의 생활파괴
- 제4 인도지원활동의 저해
- 제5 자원의 수탈
 - 1 미국기업에 의한 「부흥사업」의 독점
 - 2 헬리버튼사에 의한 거액의 이익의 획득
- 제6 점령의 계속
- 제7 침략의 죄 해당성
 - 1 점령은 침략행위
 - 2 인민자결권의 침해
 - 3 안보리의결 1483, 1511, 1546과의 관계
 - 4 죄

제3장 피억류자에의 고문

- 제1 위법한 민간인억류
- 제2 아브그레이브 형무소에서의 고문
 - 1 아브그레이브 형무소
 - 2 고문의 구체적내용
 - 3 「고문」인가 「학대」인가
 - 4 조직적인 고문
 - 5 타른 형무소에서의 고문
 - 6 죄
- 제3 여성 및 아이들에 대한 고문
- 제4 부시대통령의 형사책임

제4장 팔루자의 학살

- 제1 들어가며
 - 1 前史
 - 2 사건에 이른 경위
- 제2 학살사건의 발생
 - 1 사건의 발생과 주민의 저항
 - 2 정전(停戰)과 정전파기
 - 3 일본정부와 영국정부의 대응
 - 4 미군의 철퇴(撤退)
 - 5 새로운 학살
- 제3 미군의 범죄
 - 1 무차별폭격
 - 2 저격병에 의한 무차별 살육
 - 3 문화재에의 공격
 - 4 병원, 구급차에의 공격

제4 주민의 저항권에 관해

- 1 「무장세력」은 어떤 사람들 이었나
- 2 국민은 위법한 침략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
- 3 일본의 보도의 잘못
- 4 일본의 책임

제5 마치며

- 1 부시대통령의 죄
- 2 고이즈미수상의 죄

제5장 고이즈미수상의 범죄

제1 부시대통령의 침략의 죄에 대한 방조의 죄 (이라크 전쟁 개시 전부터)

- 1 이라크 전쟁 개시 전부터의 테러특조법의 방조
- 2 고이즈미수상의 미영군지지의 발언등
- 3 죄

제2 위법한 침략에 대한 공동정범 (이라크 전쟁 개시 후)

- 1 이라크 특조법 성립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문제점 (자위대파견전)
- 2 자위대파견후
- 3 고이즈미수상의 죄

제3 위법한 점령에 대한 방조

- 1 점령에의 재정지원 (對이라크 ODA)
- 2 고이즈미 수상의 책임

제4 헌법질서의 파괴

- 1 일본국헌법 9조의 내용
- 2 일본국헌법 9조의 의의
- 3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은, 「무력의 행사」를 금한 헌법9조에 반한다
- 4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은 「교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9조에 반하고 있다
- 5 고이즈미 수상의 책임

제5 재일미군기지의 달성한 역할과 범죄성

- 1 이라크 전쟁 개시전부터의 재일미군기지의 이라크에의 관여
-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재일미군기지의 관여
- 3 고이즈미 수상의 죄

결어

II. 민중법정 Q&A

Q1 민중법정이란 무엇입니까?

A ____ 민중법정은, 평화를 바라는 민중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를 위한 법정입니다. 민중이 민중을 체포하거나 투옥하는 「권력법정」과는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법정운동의 시도입니다.

민중법정의 역사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개최됐던 「러셀」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북폭」이 격화(激化)했던 1966년, 철학자 러셀이 제창하고, 철학자 사르트르를 집행재판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던 것이 「러셀법정 (러셀·사르트르법정)」입니다. 이것은 지식인에 의한 민간법정의 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전쟁」에 즈음하여, 부시대통령(부친)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미국원사법장관인 렘지클락이 주장한 「클락법정」이 유명합니다. 클락법정은 연속공청회방식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동경재판 다시하기라는 컨셉을 기초로 전시성폭력문제의 국제법에 의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민중법정이란 무엇인가 미리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가는 법정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확인해두어야만 하는 것은 「민중법정은 권력법정과 전혀 다른 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민중법정에는, 권력에 의한 뒷받침이 없습니다. 즉, 국내법상의 정상성도 없지만 국제법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재판도 아니지만 국제기관에 의한 재판도 아닙니다. 민중법정은 권력에 의한 정쟁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민중이 모여 제멋대로 여는 법정입니다.

둘째로, 민중법정에는 강제력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도 가택수색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 구인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내려도 감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수감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은 국가권력이 행하는 것과 같은 린치재판이 아닙니다. 민중법정은 국가가 법적정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적을지라도 지켜질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일 것입니다. 사실과 논리에 기초하여 국가나 국제기관에 국제법을 지키게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소란상태에서 행해지는 「인민재판」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Q2 민중법정의 진행방식은 어떠합니까?

A 민중법정을 어떻게 진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민중법정자체, 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러셀법정, 클락법정, 여성법정이라는 뛰어난 전례가 있지만, 민중법정이라 함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해야 적당한가에 관해서 정리된 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라크 국제전범민중법정 ICTI는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을 배워가며, 새로운 민중법정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충분한 결론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ICTI는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의 계보를 이어나가며 새로운 민중법정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민중법정 ICTA에서 행해진 연속공청회방식입니다. 이것은 클락법정에서 배우면서, 그 위에 목적의식적으로 재구성하고, 각지에서 공청회를 통한 증거수집과 분석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ICTA는 동경, 오사카, 치바, 三多摩, 카나가와, 톳카이, 교토, 효고, 히로시마, 오키나와, 이슬라마바드(중지), 필리핀, 학생, 枚方, 오사카대학, 각지의 민중의 노력으로 증거를 축적해 왔습니다.

둘째로,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배워, 국제법의 이론을 철저히 추구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침략의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해석과 관해서 현대국제법의 수준에 입각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에서는 전례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ICTA에서는 절차증거규칙을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규칙입니다. ICTI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민중법정은 민중이 스스로의 창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법정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국제기관에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에 철저히 근거하면서 민중자신이 지금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장입니다. 그 논의를 통해 민중법정의 진행방식을 계속해서 의논해 갑시다.

Q3 민중법정과 권력법정이란

A ICTI는 민중법정입니다. 그에 반해 동경 지방 재판소나 오사카 지방 재판소라고 하는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법정은 권력법정입니다. 양자는 다만 다른 법정이라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 입각점은 전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 원리는 반대극에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법정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국가의 주권에 기초해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의 재판소인 것입니다. 혹은, 뉘른베르크재판, 동경제판, 구 유고슬라비아법정과 같이, 국제기관에 의한 권력법정도 있습니다. 권력법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법정입니다.

첫째로,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국가권력이나 국제권력에 의한 정당화근거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가택을 수색하거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인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형무소에 수감하거나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무를 말하도록 두지 않는 실력행사를 하는 법정입니다.

셋째로, 권력법정은 계속적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정입니다. 거기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자는 경원 또는 배제됩니다.

그에 반해, 민중법정에는 법률상의 정당화근거는 없습니다. 민중법정의 정당화근거는 법정을 짊어지는 민중자신의 평화와 정의에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민중법정에는 강제수사의 권한도 없고, 만약 유죄라 해도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ICTI규정에는 형벌의 규정도 없습니다. ICTI는 이라크에서 부시, 블레어나 고이즈미의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목적이 한정되고 시간이 한정된 법정운동입니다.

Q4 ICTI에는 왜 변호인이 없는 것일까요

A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은 러셀법정에서도 클락법정에서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도 변호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다를지도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준비단계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ICTI도 그 논의에 따랐습니다.

첫째로, 민중법정에는 피고인에 변호인을 붙여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신의 자유나 적정절차의 관점에서는 권력법정에 있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포, 구류, 강제수색이 행해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출두 당하게 되고,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무소에 수용됩니다. 민중법정에서는 피고인에 이러한 신병구속등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피고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실력행사는 일절 없습니다.

둘째로, 적정절차 가운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관점에 관해서는 방어권의 기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을 송부하고 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피고인과 대리관계가 없는 변호인을 특별히 법정이 맡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의 심리에서, 변호인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ICTI피고인 조지부시대통령, 블레어수상, 고이즈미수상등의 입장은, ICTI자체를 일절 인정하지 않음은 말할필요도 없습니다. ICTI를 인정하지 않는 부시, 블레어나 고이즈미에 ICTI에서 변호인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소송의 논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ICTI는 변호인을 대신하여, 아미카스큐리에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법정에서 채용되어 온 「법정의 친구」로서의 전문가의 감정이나 증언입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법정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형사소송은 재판하는 자와 재판받는 자의 이면구조였습니다. 예도시대의 부교(奉行)에 의한 재판드라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사자(검사와 피고인)와 재판소의 삼면구조는 근대적인 법정에서 겨우 확립한 것입니다.

둘째, 근대법에서도 그 기본형태는 본인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그 외의 전문화에 따라서 변호인제도가 이뤄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에서도, 일부의 형사재판(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된 중요사건) 이외는 변호인이 있는 쪽이

넷째, 구 유고슬라비아법정에 있어 밀로셰비치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만, 변호인없이 법정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불가결하다」라는 생각은 단순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민중법정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우리 ICTI가 어떠한 법정의 본연의 자세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입니다. ICTI의 논의 중에서는 먼저 올려진 이유와 부시, 블레어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사실이나 부시의 주장내용은 미국이나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 크게 선전된 공지의 사실이고 그 변호를 위해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붙이지 않고, 아미카스큐리에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¹⁾

검사단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람들

대(對)

천황 히로히토 외, 및 일본정부

인정(認定)에 대한 개요

2000년 12월 12일

판사: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도(수석)

판사: 칼멘 마리아 알히바이

판사: 크리스틴 친킨

판사: 윌리 무통가

1) 이 판결문은 12월 12일 판사단에 의한 요약판결문 일어판을 번역한 것입니다(역자 김운옥)

침묵의 역사를 깨고

1. 1950년대 초두, 아시아 여성들은 50년여에 걸친 고통에 찬 침묵을 깨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쟁중이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자신과 또한 다른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제도 하에서 입은 폭력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완곡히 '위안부'라고 불리었는데 그 용기있는 증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에 걸쳐서 다시금 몇백명의 피해여성들에게 침묵을 깨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들은 함께 적어도 약 20만명의 소녀나 여성들에게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했던 강간, 성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기타의 성폭력의 공포에 대하여 세계가 눈을 뜨게 해왔다. 청춘과 미래를 빼앗긴 그녀들은 폭력의 행사, 강제나 기만에 의해서 징집되고, 매매되어 '위안소', 보다 정확하게는 성노예제 시설에 유폐되어 일본군의 주둔지나 전선에서의 생활을 강제 당했던 것이다.

2. 살아남은 여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처녀귀신이 되어서 죽고싶지 않다 - 문필기 (한국)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기만 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도 부끄러워서 깊은 구멍을 파서 그 안에 파묻어 버렸다 - 마키시마 레가라 데라 크루즈 (필리핀)

저는 인생을 잃고, 더럽혀진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수단도 없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몹시 고생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일본인은 그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 高寶珠(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라면 인간보다는 개가 낫다" - 베렌 아론소 사군 (필리핀)
살아남기 위해서 명령에 따랐어요 - 盧滿妹 (대만)

처녀였던 나를 10명의 남자가 강간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교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물취급을 받았습니다. 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끝난 후에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 스하나 (인도네시아)

일본이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 원죽림 (중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는것을 요구합니다....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 에스메랄다 보에 (동티모르)

3. 증언에 나선 피해여성들의 용기는 근래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녀들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증언에 나선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존중이라는 보다 큰 운동이 일어나는데 공헌했고 이러한 범죄가 불처벌로 끝나고 전쟁이나 정복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가 부수적인 것이라는 관념을 규탄해 온 것이다.

4. 20세기의 바로 최후시기에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일본군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피해자들 자신에 의한, 그리고 그녀들을 위한 10년 가까이 걸친 노력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 ‘법정’은 국가가 정의를 행할 책임을 다는 것을 게을리 해 온 결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태만의 책임의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국이 1946년4월부터 1948년 11월까지의 극동국제군사법정 ‘도교재판’에서 성노예제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일본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법정이, 특히 국제적으로 구성된 법정이 이러한 대규모적인 조직적 잔학 행위를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제일 큰 책임은 55년 이상에 걸쳐서 책임자 처벌도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 등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본정부에게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은 피해자들이 1990년이래 되풀이해 왔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한 세심한 조사,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정식 권고를 무시하여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이 ‘법정’은 살아남은 피해자의 소리가 이러한 불이행으로 침묵 당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며, 이러한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애매하게 해서 안된다는 확신에서 생긴 것이다. 이 ‘법정’은 여성에 대한 범죄, 특히 성적 범죄를 왜소화하고, 면책하고, 주변화하고, 불명확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역사의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것이 백인이 아닌 여성에 대해 행해진 범죄인 경우에 보다 현저했다. 또한 이 ‘법정’은 용감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 인생의 종국에 서서 몇번이나 되풀이하여 표명해 왔듯이, 여성들에게 범한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남겨진 세월을 그녀들이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강한 확신에서 설치된 것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이러한 잔학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희망과 기대인 것이다. 이 ‘법정’은 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6. 이 ‘법정’은 지구시민사회의 소리로 만들어진 ‘민중법정’이다. 이 법정의 권위는 국가나 정부간 조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그리고 바로 일본이 국제법 아래서 설명 책임을 지고있는 세계 사람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 법정에는 적정법 수속의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법정은 적정법 수속은 보증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의도도 없다. 이 법정은 국가가 남긴 국제법위반의 문제에 파고드는 것이며, 국가의 대역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 법정의 힘은 많은 인권활동이 그렇듯이, 증거를 검증하고 역사에 남는 기록을 만들어 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최대의 수치란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보상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7. 이 민중법정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대표를 장으로 하는 국제실행위원회에 의하여 생겼다. 이 세 사람은 각기 1991년부터 피해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녀들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이며 ‘생존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해서’이다. 본 법정은 2000년12월8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8. 국제실행위원회와 검사들이 '법정현장'을 기초하고 재판관들이 승인했다. 제2조는 인도에 대한 죄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그 죄로는 성노예제, 강간, 기타의 형태의 성폭력, 노예화, 고문, 강제이송, 박해, 살해 섬멸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현장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각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든지 유죄로 인정되지 않든지, 혹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증거불충분한지를 분명하게 밝힐 의무를 표명하고 있다.

9. 이 법정에서 행해진 발표나 기소장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남북조선(공동제출),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그리고 대만의 법률가인 각국 검사들이 인솔하는 입장을 넘은, 집단적 협력으로 준비된 것이다. 각국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2년 이상 걸친 노력을 거쳐, 이 법정을 결실로 가져왔다. 이들 각국 검사들에게 작년부터 2명의 수석검사가 가세하고 그 참가로 이 준비과정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가 맡겨지게 된 것이다. 수석검사가 종합기소장을 제출하고 여기에는 각국 검사단도 참여했다.

10. 이 법정은 천왕 히로히토를 포함하는 일본정부와 일본군 고관들에 대해서 인도에 관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제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피고인 몇 명도 성노예제라는 사태에서 생긴 죄상을 과거에 한번도 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점에서 이 법정은 극동국제군사법정, 즉 당초의 '도교재판'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정은 당시 적용 가능했던 법을 적용하고, 피고인을 재판하고, 관련되는 '도교재판'의 법률과 사실의 인정을 확립된 것으로서 채용한다.

1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현장'은 나아가서 국제적 불법행위에서 생기는 국가책임의 불이행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법정은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을 특수하게 결부시키고 있다. 제4조에 의하면 국제적 불법행위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규명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 기소나 보상을 게을리 하는 것, 개개인의 고결함, 복리, 존엄을 지킬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 차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12. 제14조는 이 법정이 사죄,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할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피고 개인이나 국가에 의한 책임에 대해 권고할 권한을 주고 있다.

13. 일본정부는 2000년 11월 9일자로 이 법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방청과 참가의 초대를 받았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는 법정조언자(아미카스 큐리에)로서의 일본인변호사의 변론을 청취하고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취했던 입장에 대해 기타의 자료도 검토했다.

14. 이 법정에는 64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죽은 혹은 아직도 침묵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소녀나 여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스스로 증언하고 나아가서 많은 여성들이 비디오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증언을 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상상을 넘는 가장 잔혹한 행위에 대한 증언이었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도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는 역사가, 법률 기타의 전문가, 나아가서는 이러한 잔학 행위에 참가했던 두명의 일본군 병사의 증언도 들었다. 이 법정에서는 회고록이나 한정된 수이기는 하지만 정부측 공식문서 등 증거문서도 받았다. 이러한 서류는 일본군에 의한 항복후의 서류파괴를 면하고 일본정부나 연합국정부에 의하여 임의로 공개된 것이다. 이 법정은 웅변으로 증언을 행한 생존자들의 용기와 존엄을 존중함과 동시에 포괄적이며 유효하며 질서 잡힌 방법으로 증거제출을 행한 검사단의 훌륭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 법정은 전 일본군병사들의 증언의 의지와 성실함에 감사한다.

15. 재판관들은 심리가 원활히, 그리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한 국제실행위원회, 서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법정담당자에게 감사한다.

16. 각 재판관은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이 법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 민중법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요지는 법적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국제법의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서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는 확신에서 있다.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그 재발을 가져오고, 불처벌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특히 성폭력, 젠더 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해당된다.

17.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는 전파성이 있으며 전쟁시 그 빈도와 잔학성이 증가한다. 법정의 심리가 분명히 했던 것은 소녀나 여성에 대한 성노예의 제도화가 일본군의 군사행동의 필요 불가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10년간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국제전범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고 기소되는 눈부신 진보를 가져왔다. 이 법정은 불처벌을 종결시키고, 여성의 신체적 일체성이나 인격의 존엄, 바로 그녀들의 인간성 그 자체를 무시하는 풍조를 역전시키기 위한 진일보인 것이다.

18. 증언을 통하여 일관되게 말해진 것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함으로써 더 한층 비참해졌다는 것이었다. 그 비극의 책임이 그녀들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성차별적인 태도의 결과, 치욕으로 고통받고,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 법정이 인정한 사실은 책임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공헌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지배적인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이하에 기술하는 것은 재판중 이 법정이 청취하고 수리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과 법적 인정의 요지이다. 판결은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공포될 것이다.

예비적 사실인정

《위안부제도》

20. 최초의 군‘위안소’는 1932년 일본 침략 후 상해에 설치되었다. ‘위안소’제도의 구조화는

남경에서의 수많은 학살, 강간, 약탈 등 '남경대강간'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잔학 행위의 발생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책으로서 행해졌다. 그 결과, 일본병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본군에게 성적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 밖의 다양한 성노예제 시설, 또한 복잡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설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고 확보하는 것은 전략의 불가결의 일부이며, 점령지역에서의 시설 밖에서의 강간을 감소하고 그것으로 지역주민의 항일운동을 억제하고 일본의 국제적 악평을 회피하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성병으로부터 지킨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또는 강요당했고 흔히 사기적인 감언으로 '징집'되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었다. 당국에 의한 또한 당국의 용인에 의한 징집으로 표적이 된 것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이었다.

21. 여성들의 노예화에는 반복적 강간, 신체손상 기타의 강간이 포함되었다. 여성들은 불충분한 식량, 물, 위생시설이나 환기의 부족 등 비인도적 환경으로 고통받았다. 그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다. 쥐나 이, 전염병, 오물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생활했음을 여성들은 증명하고 있다. 구타, 심리적 고문, 고립 등 학대는 일상다반사였다. 강간의 결과로서의 임신, 강제중절, 임신능력의 상실은 많은 '위안부'가 체험한 고통이다. 여성들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상상을 넘은 처우와 일본정부가 자국이 행한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그밖의 방법으로 보상하지 않았던 결과, 용기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을 극히 최근까지 수치와 고립과 빈곤과 잔혹한 고통의 생활에 몰아넣어 온 것이다.

법적 인정

《인도에 대한 죄》

22. 검사단은 천황히로 히토 그 밖의 일본군 정부고관을 제2차대전 중 일본군이 정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여성들의 강간과 성노예를 시인하고, 묵인하고, 방지하지 않았던 책임에 대하여 인도에 관한 죄로 기소하고 있다. 검사단에 의한 방대한 증거문서 및 증인의 증언의 수리에서 예비적 사실인정 발표까지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판사는 중핵의 피고인, 천황 히로히토의 강간과 '위안부'라 불리우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제도에 대한 책임의 평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그밖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2001년3월8일에 발표예정의 최종판결까지 인정의 발표를 연기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행함을 피해여성, 검사, 또한 아태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23. 그러므로 우리는 1945년 당시의 법과 검사단이 제출한 증거물이나 주장한 것,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폭력이 1945년 당시의 법으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다. 우리들의 인정으로는 인도에 관한 죄 - 침해행위 중에서 가장 심한 것 중의 하나 -는 전후의 각 법정에서 기소되었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현재 적절하게 기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인정으로는 강간과 성노예제는 광범위, 조직적, 또는 대규모로 행해졌을 때는 인도에 관한 죄를 구성한다. 1945년까지 강간과 노예화의 양편이 국제법 아래 극악한 범죄로 오랫동안 인정받고 있었다. 성노예제는 새로 범죄

2) 문서로 확인된 최초의 것. 상해파견군참모부장 岡村寧次의 회상록.

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화의 특별히 잔학한 침략적이며 파괴적인 형태이다. 노예화란 '인간에 대하여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노예화에는 강제적 또는 사기에 의한 이송, 강제노동 그밖에 인간을 소유물로써 취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안부'들을 군수 '물자'의 일부로 징발한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여성차별 인종차별적 태도에 근거한 성노예제가 주로 아태지역의 가난한 비 일본인 여성을 향하여 전례가 없는 규모로 제도화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4.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여 판사는 천황 히로히토를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원래 천황 히로히토는 육해군의 대원수이며,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자가 국제법에 따라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할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천황 히로히토는 단순한 괴뢰가 아니며, 오히려 전쟁의 확대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나아가서 판사의 인정으로는 천황 히로히토는 자신의 군대가 '남경대강간'중에 강간 등의 성폭력을 포함하는 잔학 행위를 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행위가 국제적 악평을 초래하고, 또한 정복된 사람들을 진압하려는 그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제재, 수사나 처벌 등 모든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소'제도의 계속적 확대를 통하여 강간과 성노예제를 영속시키고 은폐하는 방대한 노력을 고의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적어도 부주의로 허가한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하는 바로는 천황은 이런 정도의 규모의 제도는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는 알아야 했었던 것이다.

국가책임

25. 일반적 국제법 아래서는 국가는 국가의 행위에 기인하며, 타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 국가가 국제적 불법행위를 범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국가는 조약에 근거한 책무와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책무, 양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국제적 책무에 위반되는 행위인 경우, 국내법으로는 합법으로 인정되어도 그것으로 국제법 아래서도 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6. 국가의 기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국제법으로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 기관이 선거인,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어느 권력에 소속하는 것인지, 그 기관의 기능이 국제적인 성질의 것인지, 국가기구 중에서 그것이 상부기관인지 하부기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군대는 국가의 기관이다.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나 부작위만이 아니라 자기의 기관, 대리인, 관료, 피고용인 등이 자국 영토 외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7. 일본이 위반한 조약상의 책무에는 1907년의 '육상전의 법규관례에 대한' 헤이그조약, 1921년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대한 국제조약', 1930년의 ILO '강제노동금지조약' 등이 있다. 일본은 또한 국제관습법의 규범도 위반하고 있으며, 1907년의 헤이그조약이나 1926년의 노예조약에서 표현된 국제관례법의 규범에 대한 위반이 포함된다³⁾. 나아가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극동국제군사법정(도교재판)의 판결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28. 일본국가가 제2차대전 종결 시 '위안부'를 각 국가로 귀환시키는 일을 게을리 했던 것은 헤이그조약⁴⁾의 직접적 위반에 해당한다.

29. 제2차대전후 일본은 많은 조약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본 네데란드협정, 일본필리핀 배상협정,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등이 있다. 이 법정은 이들 평화조약은 '위안부'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조약으로서도 개개 국가가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한 다른 국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0. 본 법정은 모든 평화조약에는 본질적인 젠더 편향이 존재한다는 수석검사의 주장은 납득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본 법정은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모든 평화조약 체결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발언권도 지위도 가지지 않았던 점에 유의한다. 바로 그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시, 군의 성노예제와 강간의 문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되었고 조약의 교섭이나 최종적 합의에 아무런 역할도 없었던 것이다. 본 법정은 국제적인 평화교섭과정이 이렇게 젠더 인식을 결여한 채 행해지는 것은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금도 지속되는 불처벌의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보 상

"병사들을 상기하면 지금도 떨린다.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사죄해야 한다"(조선반도의 피해자).

31.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본정부가 자기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을 실행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이 여성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는지, 비밀을 지키는 것과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감각을 얼마나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해 왔는지를 명백히 했다. 일본정부가 50년 이상 걸쳐서 보상은 '적절하게, 효과적, 신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침해해 온데 대해 우리는 주목한다.

32. 일본정부가 배상을 행할 책임을 검증하는데 있어, 우리는 옛날부터 국제법의 원칙이 되어왔던 "국가는 자기가 범한 국제법적 위법행위에 대해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의 책임이란 손해배상, 원상회복, 사회복귀, 만족과 재발방지의 보증을 제공하는데 있다. 배상에는 상기의 사항 중에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그 어느 것인지, 혹은 모든 형태의 것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33. 지금까지 역대 일본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사단과 피해증인들은 의미있는 사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불법행위

3) 이 조약에 일본은 가맹하지 않았으나 이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례법으로 확립된 규범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제관례법의 규범은 조약의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4) 전술한 헤이그육상전조약(1907) 부대규칙. 이 두개를 합하여 '헤이그육상전법규'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받아드린 후의 사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당초의 죄상을 명백히 할 문서의 피기부터 침묵으로, 군의 관여를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 국제적 책무에 따르지 않는 부분적 '사죄'으로 변천해 왔다고 인정한다. 일본국가가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정하는데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수치와 침묵을 지속시키고, 생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녀들이 마음 편히 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왔다.

34.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로서 인정하는 책무가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공적 역사기록을 작성하고 미래의 세대에 이러한 잔학행위가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법정의 인정에서는 일본정부는 현재의 일본인이나 미래세대를 교육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5. 피해자들과 상담하면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며 여성들의 존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일본정부에게 있다. 나아가서 필요한 것은 당시 폭력과 노예화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침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산정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손해배상을 행해야 한다. 국제법 하에서는 손해배상은 정부가 행해야 하며, 물질적인 피해, 상실된 기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입은 고통 등을 적절히 참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의 인정으로는 아시아여성기금은 증언한 여성들 거의 모두에 의하여 격렬히 거부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36. 법정의 인정에서는 배상이 지연된 것이 여성들에게 수치와 분노와 비애와 고립과 경제적 곤궁과 빈곤, 건강문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일등의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도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37. 재활을 위한 의료와 심리적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사회적 봉사도 필요하다.

결 론

38. 심리를 통하여 본 법정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문서를 검토하고 도한 이들 범죄가 범해진 시점에서 적용가능한 법의 검토를 한 후에 법정은 사실인정의 개요를 발표했다. 최종판결은 2001년 3월 8일에 발표된다.

39. 법정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검사단이 피고인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 입증한 것을 인정하며, 천황 히로히토는 공통기소장 중 인도에 대한 죄의 소인(訴因)1과 2인 강간과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인도에 대한 죄의 소인3의 강간에 대해서도 유죄이다. 나아가서 판사는 일본정부가 '법정현장' 제4조가 말하는 의미로 '위안소'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고 판정한다.

40. 기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사는 현 단계에서 형사책임에 대해 인정하기 위해 본 법정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를 소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 피고인의 개인으로서의 또한 상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종판결 시에 판결하는 것으로 한다.

권 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1. 완전하고 성실한 사죄를 행할 것. '위안부'에게 용서를 빌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2.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생존자에게 보상할 것. 그 금액은 가해행위 별로 적절할 것.
3. 적절한 정보를 낼 것.
4. 인적 자원과 기구를 운영하며 조사를 할 것.
5. 생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도서관 박물관, 추도비를 세울 것.
6. 공식 비공식적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교과서에 기술할 것. 장학금을 보장하고 젊은이에게 불법행위의 사실을 전할 것.
7. 성의 평등성을 확립할 것.

《전 연합국에 대하여》

8. 도쿄극동재판에서 쇼와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

《유엔에게》

9.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일본정부가 보상하도록 권고할 것.

자료색인			
제 목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		
저 자	여성국제법정 판사단 / 김윤옥 번역		
작성일	2000년 12월 12일		
출 처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http://www.tribunal2000.org/index.html		
분 류	인권		
갈무리날짜	2001년 4월 9일	세상바로보기	

코리아 국제전범법정 판결문

뉴욕에서 열린 6·23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1945년부터 2001년까지 미합중국(이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인민에게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군사관련 정부인사 및 참모총장, 중앙정보기구와 해외 정보기구의 모든 책임자, 국가안보국장, 국가안보자문위원,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한국/조선전쟁에 관여한 모든 미군 사령관을 총망라한 미국 정부의 유엔헌장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위반, 1907년 헤이그 협약 위반, 1925년 제네바 협약 위반, 1929년과 1949년 제네바 협약 위반, 1948년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미합중국 법률 위반, 대한민국 법률 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 위반, 한국/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위해 기지, 물자, 병력지원을 강요받는 국가들의 법률 위반과 여타 국제협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19건의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에 대해 ;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미국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며 ;

지난해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에 의해 수집된 증언을 경청하였으며, 1952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951년 국제민주녀성동맹의 조사보고서 및 2000년과 2001년에 걸친 4차례의 전민특위 국제진상조사단에 의해 수집된 증언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으며 ;

전민특위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증거자료, 증인들의 증언자료, 비디오 테이프 영상자료, 특별보고서, 전문가의 분석과 증거 적요서를 제공받았으며 ;

전민특위와 국제진상조사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와 증언, 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친 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한국 농촌지역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의 증언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된 전민특위 남측본부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

1950년 6월에서 1950년 12월까지 조선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조선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선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

전민특위를 통해 한/조선반도에서, 특히 군대와 군 체계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정황에 대해 분석한 각종 서적 및 신문기사 그리고 문서자료를 제공받거나 입수하였으며 ;

2001년 6월 23일의 공개 심리과정에서 전민특위가 제출한 증언, 증거, 및 진술, 적 요를 경청하였으며 ;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의한 비자거부와 출국금지로 법정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조선인들의 증언을 비디오로 녹화된 인터뷰자료와 문서자료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

전민특위가 미국 정부에게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결이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재판에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

이 본 법정은 고소장에서 강력히 제기된 19건의 범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재판부 성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고려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 결]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피고에 대해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심리 결과, 고소장에서 제기된 19건의 개별범죄가 명백히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었다. 본 법정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미국의 한국/조선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였던 다음의 주요한 세 기간동안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가장 잘 알려진 시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에 이르는 한국/조선전쟁 기간이다. 서방국가들에 의해 추산되는 대략적 수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4백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민간인은 조선이 3백만 명, 한국이 50만 명에 이른다. 본 법정에서 제시된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는 전쟁기간동안 한국에서 미군이 자행한 수천 명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증명하는 증인의 증언과 서류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에서 행해진 미국의 대량학살에 대한 증거자료 또한 제시되었다. 자료에는 미군의 폭격과 공중폭격을 통한 건물, 주거지의 계획적이고 완전한 파괴; 민간인과 전쟁포로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의 광범위한 잔혹행위; 민간인의 일상생활과 경제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행위; 조선인민과 환경에 대한 미군의 불법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헌상의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집단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와 살인으로 대표되는 한국/조선 여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아니하였으나, 한국/조선 전쟁의 진상 파악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간으로 1945년 9월 8일의 미군의 한반도상륙에서 전쟁발발 전까지의 5년간의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법정은 이 기간동안 미군에 의해 자행된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조사하였다.

미국 정부가 대다수의 한국 국민/조선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한/조선반도를 분할하고, 주권을 침해하였으며,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에 협력했던 자들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 경찰국가를 수립하고, 한국과 조선간의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켜 한국/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반대하고 방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정부의 조직적인 살인, 투옥, 고문, 감시를 통한 인권 유린행위, 특히 민족주의자, 좌익 인사,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노조간부 및 조선에 동조적인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억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계획, 명령, 교사, 방조하였다.

3. 본 법정은 19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국제법 위반 행위를 통해 핵무기를 위시한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한국 내에 주둔시키고, 한국 국민과 조선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국 여성에 대한 집단적 성적 착취가 빈번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미군에 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론 심지어는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 미국정부가 취한 경제봉쇄로 인하여 조선 인민은 빈곤을 비롯한 경제악화로 고통받고 있다. 인민들의 수명이 단축되었고, 한때 식량수출국이었던 조선의 주민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재판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재판에 참가하려는 변호인단과 증언자들로 구성된 조선 대표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부당, 불법한 처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조선의 의지를 방해하려는 범죄적 의사를 스스로 재확인시켜주었다.

55년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를 은폐하고자, 언론매체를 조직적으로 조작, 통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 주력해왔다. 또한 미국정부는 군대를 포함한 자국 국민들에게 인종차별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한국국민/조선인민에 대한 잔혹 행위와 대량학살을 조장, 감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조선반도 내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법적인 의도로 미합중국 헌법 ; 전쟁과 군대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규약 ; 인권에 관한 권리장전 ; 유엔헌장 ; 국제법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을 위반하였다.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미국 정부가 자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며, 본 법정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권 고]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한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 점령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모든 군사기지 및 지뢰를 포함한 군수물자의 철거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환경파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조선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적인 정탐 및 첩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50년간 지속되어온 반인도적 범죄인 조선에 대한 모든 금수 조치, 경제 봉쇄와 부당한 압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의 불법적인 조선 고립화정책의 결과로 인해 초래된 빈곤과 기아,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조선 인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55년간 한/조선 민족에게 미국이 가한 전쟁위협, 경제침탈, 미군범죄 등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이 한/조선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국가건설을 가로막을 의도로 행하는 모든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1945년 9월 7일 이후 한/조선반도에서 자행된 미국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게 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증언, 증거 자료들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조선반

도에서 자행된 미군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본 법정은 전세계가 영구적인 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회정의의 확립을 위해 전민특위가 제기한 '모든 사람이 권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동재판장 : 지텐드라 샤르마 브라이언 월슨

국제재판부 : 말콤 케넌	미쉬 도우먼	스토펙 앤디콧
산드라 스미스	주디 쳉	구스타보
구이 듀프이	휴고 버나드	울프강 리처
벤자민 듀푸이	하리 샤르마	오종렬
윤영무	캐서린 디종	벤 파마
마가렛 세넷	에드너 올릴리아	아네도 발레라
베르타 주버트 세시	호세 화리나찌	게일 콜선
던닥 거서스	찰스 오버비	다이드라 그리스월드
펠튼 메이	커렌 텔벗	월슨 파월
밀로스 랄코비치		

2001년 6월 23일 뉴욕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판 결(요약)

- 피 고 인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대통령
(James Earl Carter, Jr., 3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윌리엄 글라이스틴, 1980. 5. 당시 주한미국대사
(William H. Gleysteen, U.S.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3. 존 아담스 위컴, 1980. 5.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 사령관
(John Adams Wickham, Jr. Commander in Chief o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Eighth United States Army)
 4. 헤럴드 브라운, 1980. 5. 당시 미 국방장관
(Harold Brown, Secretary of Defense)
 5. 스탠스필드 터너, 1980. 5.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Stansfield Turner,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1980. 5.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Zbigniew Brzezinski, National Security Advisor)
 7. 워렌 크리스토퍼, 1980. 5. 당시 미 국무부 차관
(Warren Christopher, Vice-Secretary of State)

8. 리처드 홀부르크, 1980. 5.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Richard Holbrook,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검 사 심재환, 손미희, 김승교

변 호 인 권정호, 장경욱

주 문

1. 피고인들은 기소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이다.
2. 이 법정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이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아래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가. 미국이 행한 다음의 행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 ① 미국이 1980. 5. 17.부터 1981. 1. 24.까지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한민국 군대의 무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
 - ② 미국의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건 피

고인들이 미국의 대외적 국가행위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내란 및 내란 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행위.

- ③ 미국이 이 사건 피고인들을 그들이 범한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비호한 행위.
- ④ 미국이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행위.
- ⑤ 미국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나.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

다. 이 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①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의 완전한 사본 등 미국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광주학살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
- ②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조속히 대한민국 군대에 관한 일체의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③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이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6월 이내에 개시하여 1년 이내에 호혜평등에 입각한 협정으로 개정할 것.
-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2년 이내에 호혜평등에 입각한 내용으로 개정할 것.
- ⑤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의 진전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할 것

4. 이 범정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즉시 1979. 10. 26.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 영향력의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1980년 5월에 계엄군에 의하여 광주에서 행해진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1980년 5월, 그때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1979. 10. 26. 박정희가 피살되고 유신독재가 붕괴된 후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하고 강경조치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며 제2의 유신독재를 되살리려 기도하였다.
2.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일어난 광주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한 신군부의 전대미문의 살육으로 짓밟혔다. 그러나 광주의 희생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 1987년 6월 항쟁을 꽃피워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1995. 12. 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의 열매를 맺었다.
3.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는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온 미국은 부인으로 일관하여, 아직도 그 진상은 가리워져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당시 책임자들을 시민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광주항쟁이 남긴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이다.
4. 1980년 5월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을 주관하던 미국의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 집행과정의 일환으로써 한국

에 대하여 내정간섭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이 당시의 전두환 등 신군부의 민간인 살해행위, 민간인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민간인을 고문하는 행위, 민간인 집단을 타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격리·고립시키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의 실행과정에서 행해진 신체의 특정 성적 부위에 대한 위해 등 기타 중대한 성폭력 등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명령, 교사, 실행, 방조, 예비, 음모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문제이다.

5. 2002년 2월, 미국문제 관련 사회단체들이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로 한 뒤, 66명의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발기인들이 준비에 나섰고,
 4. 25. 서울에서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6. 추진위원회는 5.18 시민법정의 재판부 구성원과 검사단을 임명하였고, 검사단은 2002. 5. 1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장을 시민법정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며,
같은 날 재판부는 미국대사관에 검사단이 제출한 기소장과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전달하였다.
7. 그리하여 2002. 5. 18., 오늘 시민법정이 개정되었고 재판부가 배심원단을 선임하여 재판을 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부는 헌장에 따라 피고인들을 변호할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8.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1980. 5. 17.부터 1981. 1. 24.까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와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행위, 집단살해행위,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검사단은 이와 함께 1979. 10. 26. 독재자 박정희의 피살에 의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하여 무참히 진압되어 1980. 5. 27. 계엄군에 의하여 전남도청이 점령될 때까지,

미국의 관리 또는 군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어떻게 한국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신군부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행위,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살해행위,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공모, 지원하고 지지하였는지,

그 후에 피고인들 및 미국이 어떻게 피고인들의 범죄행각을 은폐하고 왜곡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기소하였다.

9. 그리고 검사단은 이러한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 글라이스틴 주한미 대사와 미 국무부 사이에 교환된 방대한 분량의 비밀전문과 미 국방부의 정보수집전문, 한국군의 이동 및 작전수행과 작전통제권 변동에 관한 군 문서, 피고인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내용, 국내외 언론보도, 5.18 학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검시조서와 언론통제에 관한 자료, 관련 연구논문과 광주항쟁에 관한 영상물 그리고 피해자와 당시의 주한미군인, 전문연구자 등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법정은 이러한 증거들에 관하여 모두 상세한 조사를 마쳤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주장들을 개진하였다.

10. 이 법정의 심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한 배심원단은 검사단의 공소사실과 검사단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검토하여 평의

를 거쳐 평결하였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검사단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임을 평결하였고, 당사국인 미국은 피고인들의 공모아래 1980년 5월 광주에서 저질러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 집단살해행위,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국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평결하였다.

11. 그러므로 이 법정은 신중하고 면밀한 합의를 통하여, 헌장 서문의 이념과 헌장의 각 관계규정,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경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들 및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행한 행위의 동기와 내용, 그 후의 피고인들과 미국의 행적,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및 관계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이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서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2002. 5. 18.

수석판사	최 병 모
판사	오 중 렬
판사	김 윤 자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 간 법 정
관 결

피 고 인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의 61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수석검사 장병화
검 사 조정환, 김동민

변 호 인 류제성, 김진정희

주 문

1.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이다.

2.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하라.

나. 피고인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다. 피고인은 정의를 위하여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민간법정의 의의

2004년 3월 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원래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 누더기법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방해법이니 하는 말도 과분할 정도다. 당장 폐기하여야 할 쓰레기법일 뿐이다. 쓰레기법을 개정하는 법안에도 반대 세력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피고인 조선일보도 그들 중 하나다.

이는 과거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 당하였던 수모를 떠올리게 한다. 반민법은 수차례의 개악 과정을 거쳐 결국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한 채 폐지되었고, 오히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내년이 해방 60주년이 되지만 이 땅에서 친일반민족행위는 그 동안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었고 미화되었다.

특별법은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력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불행이다. 이를 되풀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의 민간법정은 2002년 민간법정에 이은 두번째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법정으로서 당시 기소한 사항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3개항의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조선일보는 사죄와 임직원 징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민간법정은 피고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법정이다.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주·반통일 행위를 뉘우침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있고, 첫번째 민간법정 이후 새로 밝혀진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국민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기에 민간법정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민간법정은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이며, 공권력의 법정이 아니라 민족

의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 판결에서 밝혔듯이 친일 반민족 행위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민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소 내용

기소 사실과 동일

3. 배심원단의 평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2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제 강점하에서 강요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법원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듯이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절대적 명령 복종의무가 불문율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행위인 고문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 한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 현실법정에서도 엄격한 판결을 하고 있거늘 역사의 법정에서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일행위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요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특히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제의 강요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검사단이 기소한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4. 권고 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이나 민간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첫번째 민간법정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판결 주문과 같이 3개항의 권고를 하기로 한다.

아울러 민간법정은 국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법부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회수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친일매국행위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입법부는 조속히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정당은 당리당락을 버리고 과거청산과 민족정기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결 론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본 민간법정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4년 10월 15일

판사 이 덕 우

민변 헌법소원청구서. 2003년. 출처 민변 사이트

헌법소원청구서

청 구 인 최 병 모 외 16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피청구인 1. 대한민국 대통령
2. 대한민국 국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3. 21.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과 피청구인 국회가 2003. 4. 2.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는 각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관련 헌법위반 조항 :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5조 제2항 국군의 사명,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침해의 원인

1. 피청구인 대통령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
2. 피청구인 국회의 2003. 4. 2.자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1 대한민국 대통령(이하 “피청구인 1”이라고 합니다)은 헌법 제66조 제1항,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군을 통수하는 헌법기관이고, 피청구인 2 대한민국 국회(이하 “피청구인 2”라고 합니다)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 1이 제출한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이며,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2003. 3. 20.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하여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여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청구인 1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3. 21.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600여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여 파병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1의 이러한 결정은 2003. 4. 2.자로 피청구인 2의 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며, 헌법 제6조는 국제법 준종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전문과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이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는데, 피청구인 1의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이하 “파병결정”이라 합니다)은 이러한 헌법수호책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2의 동의권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 1의 국군 부대 파견결정이 위헌인 이상 피청구인 2의 동의권 행사 역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이 분명합니다. 피청구인 1의 파병결정과 피청구인 2의 파견 동의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

가.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규정

(1)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침략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는데, 헌법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군의 해외파병도 집단적 자위권 등 국제연합의 결정에 의거하여 방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합헌적인 것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으로 규정될 경우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피청구인 1의 파병결정과 피청구인 2의 파병동의는 바로 이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일 수